

서울특별시 서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유지웅의원 대표발의)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475호)

○ 2026.03.26.
○ 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. 3. 13. 유지웅의원 외 6인(발의7, 찬성0)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26. 3. 26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지웅 의원)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 조례는 이를 ‘해당액’이 아닌 ‘상당액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음. 이에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아울러,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성훈)

■ 개정취지

-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출을 통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“상당액”이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정비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■ 주요 개정조례안 검토

- 안 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제2항은 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바, 조문의 중복적 표현을 정비하고자 별표 2를 준용하고, 제3항을 삭제하여 그 내용을 제2항의 본문 후단에 명시함으로써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안 제4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)는 관계법령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상당액으로 명시하고 있음.
 - 상당액은 ‘어지간히 많은 금액’ 또는 ‘어떠한 기준량에 알맞은 금액(해당액)’을 뜻하는 명사로 국립국어원에서 표준화 용어로서 “해당액”으로 정리되어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“상당액”의 불분명한 용어를 “해당액”이라는 용어로 정리할 것을 권고한 바, 안 제4조의 용어 정리 및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됨.

- 안 별표 2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)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관련으로 불필요한 지급 대상을 정비하였음.
- 그 밖에 띄어쓰기·용어정리(안 제2조, 안 제5조),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(별표 1) 등이 정비되었음.

■ 종합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출을 위해 “상당액”이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용어로의 정비 및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고,
-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사 및 토론요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사구정리내용 : 없음